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 권고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도개선 추진계획(붙임2)』은 2018. 1.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위과제별 이행실적(붙임3)』은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2019. 1. 31.까지)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도개선 의결서(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감사담당관)

행정사무관	김영돈	사회제도개선 과장	문석구	권익개선정책 국장	2017. 12. 12. 임윤주
협조자					
시행	사회제도개선과-1403	(2017. 12. 12.)	접수	민간협력과-1827	(2017.12.13.)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국민권익 위원회)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255	팩스번호	044-200-7923	/ syk307@korea.kr	/ 비공개(5)